

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현대두산인프라코어주식회사(이하 "회사" 라 한다)의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직무와 권한)

-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.
-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363조의2 제1항, 제542조의6 제1항·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. <2009. 3. 27. 일부개정><2012. 3. 30. 일부개정>
-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성과 및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규정(이하 "본 규정"이라 한다)의 내용을 매년 검토하여, 필요한 경우 본 규정의 개정을 이사회에 건의한다.
- ④ 위원회는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4조 (구성 및 임기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 이라 한다)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한다. <2012. 3. 30. 일부개정>
- ③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.

제5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한다.
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-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활동내용의 요지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,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선임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(이하 “직무대행자”라 한다). 단, 위원장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직무대행자 선임을 위한 결의를 위한 절차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참석자 중 선임 위원, 연장자의 순으로 주재하기로 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6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⑤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주일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7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회일을 정하여 늦어도 직전일까지 위원에 대하여 문서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8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**음성**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 <2012. 3. 30. 일부개정>

제9조 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사외이사후보의 추천

2.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 사항
3.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한 사항

제10조 (사외이사 후보)

- ① 위원회는 회사의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과 이사회 전문성 제고에 적합한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후보 추천자문단이 추천하는 사외이사후보자들 중 사외이사후보를 선정하여야 한다. <2013. 2. 4. 일부개정>

제11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-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12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4 장 보 칙

제13조 (간사)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14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02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0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3. 이 규정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4. 이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제4조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201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5. 이 규정은 2013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.